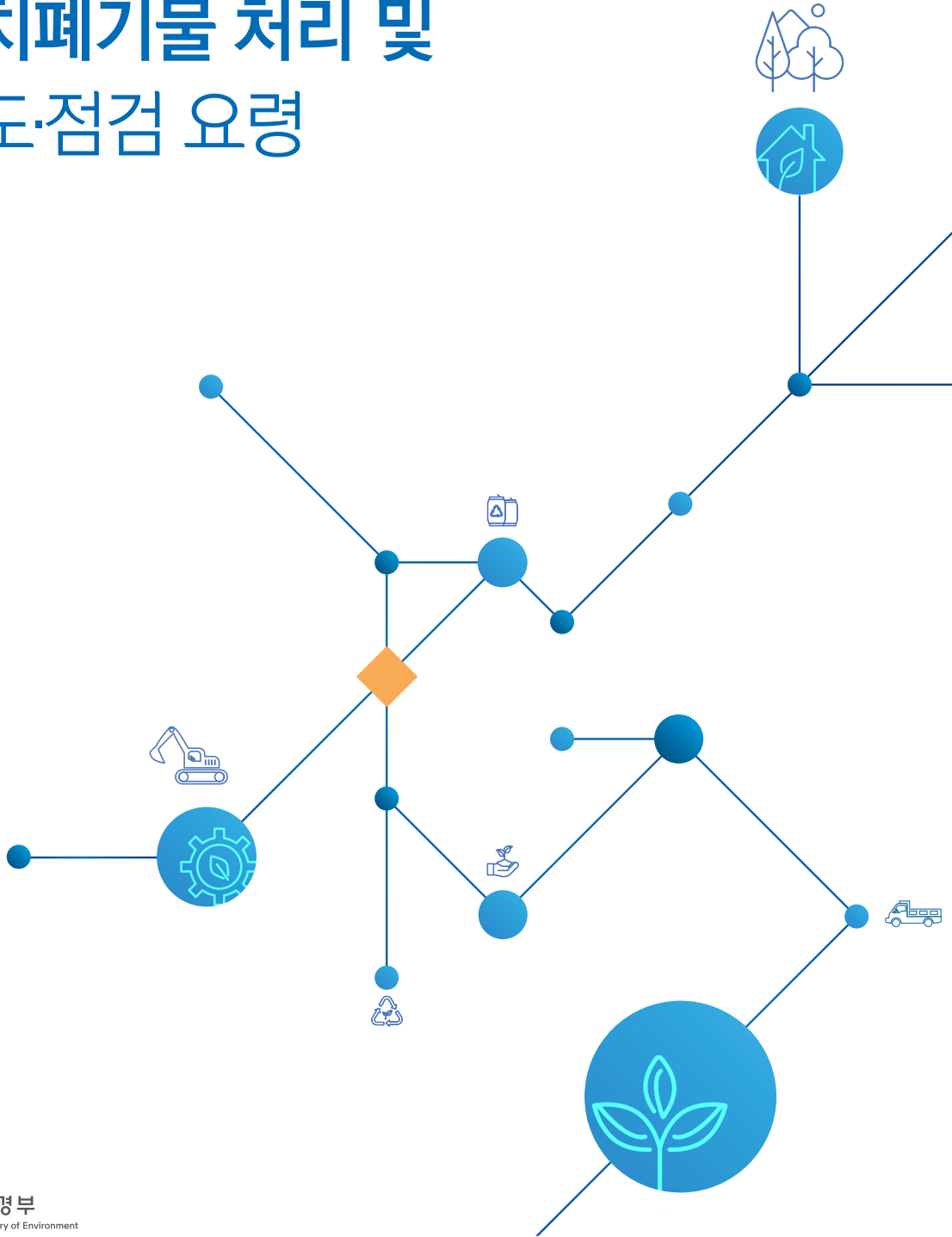


방치폐기물 처리 및 지도·점검 요령



Contents



I . 공제조합 소개	02
II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03
III .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06
IV . 방치폐기물 처리사례	07
V .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20
VI . 협조 사항	30
VII . 관련 법령 및 참조 사항	31
부 록	
0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7
02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41

I. 공제조합 소개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47조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1999. 12. 설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보증하는 기관

02 「폐기물관리법」제41조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2000. 1. 설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중 소각전문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기관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1999. 11. 설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중 재활용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기관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2014.10. 설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중 재활용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기관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2000.12. 설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중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처리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을 보증하는 기관
-

II.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이 개 요

- (정의)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
-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 (가입현황) 전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대상 업체 중 공제조합 가입률이 업체수로는 22.7%, 금액으로는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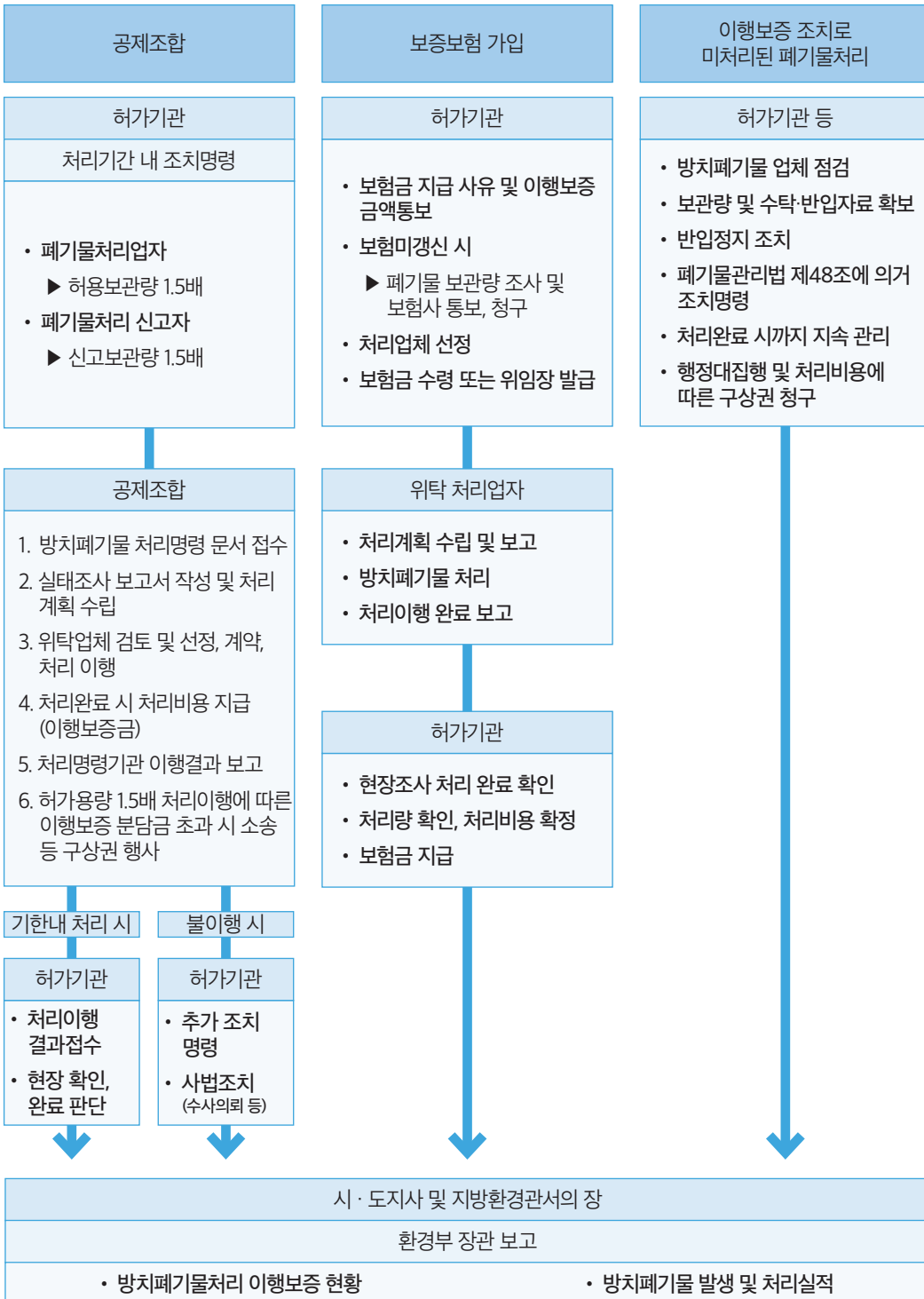
(‘16.12월 기준)

구 분	계		공제조합		보증보험	
	업체수 (개소)	가입금액 (백만원)	업체수 (개소)	가입금액 (백만원)	업체수 (개소)	가입금액 (백만원)
계	6,512	558,753	1,476	29,676	5,036	529,077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577	76,707	347	16,025	230	60,682
수집운반업	339	10,454	39	58	300	10,396
폐기물중간처분업	211	37,385	68	3,373	143	34,012
폐기물중간재활용업	1,288	108,923	178	990	1,110	107,933
폐기물최종재활용업	306	14,335	53	520	253	13,815
폐기물종합재활용업	3,808	310,949	815	8,710	2,993	302,239

- (이행보증 방법)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참조

구분	공제조합	보증보험
보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납부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안전율 (1.5 또는 3.0) × 보관량별 요율(0.1~0.9)* * 허용보관량에 따라 차별 적용(건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안전율 (1.5 또는 3.0) × 보험요율(0.082~0.329%)* *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 적용
사전 후 예방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등 실시(연 1회 이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에 대해 채권 확보 등 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예방조치 없음 지자체 이행보증 조치 통보에 따라 보증범위내 처리비 부담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 등을 통한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관리 가능 정부와 정보교류 및 소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금 납부로 업체의 비용부담이 적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분담금 부담이 큼 공제조합 점검에 따른 업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미흡

02 이행보증 절차



Ⅲ.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01 개요

- (정의) 행정대집행은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치폐기물처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인 원인자, 토지주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 (관련근거) 행정대집행법('54. 3월 제정, '54. 10월 시행)
 - ※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대집행의 절차 등 9개 조문으로 구성
 - 대집행에 관하여는 각 개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 밖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일반적으로 적용
 -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강제하고 제재를 수반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제정되어 거의 개정되지 않음 (2019.4월 현재 총 3회 개정)

02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절차



IV.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01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례1

(주)○○환경

• 배 경

-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미 이행 및 보관시설기준 미달로 허가취소 이후 방치폐기물 발생
- 사업장 부지 내에 지하 약 3m까지 매립폐기물을 허가기관 및 토지주 입회하여 확인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토지주 처리물량
27,320톤 (허용보관량 8,800톤)	13,200톤 (허용보관량 1.5배)	14,120톤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전체 27,320톤 (조합 13,200톤, 토지주 14,120톤)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로 전량 재활용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1) : 사업장 부지 내 매립폐기물 위에 약 1~3m 복토하여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음
⇒ 해결방법 1) : 처리 구간을 나눠서 매립폐기물 처리 후 처리된 구간에 복토하여 순차적으로 처리 완료
- 문제점 2) : 토지주(3명) 처리비용 분담 비율 의견
⇒ 해결방법 2) :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 금액을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

총 발생량 27,320톤 (매립폐기물 포함)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굴착을 통해 확인된 매립폐기물 (허기기관 및 토지주 입회)

• 처리완료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27,320톤

* 조합 13,200톤, 토지주 14,120톤

- 처리기간 : 2014.06월 ~ 11월(약 6개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완료 확인서

사업장명 : 태안건설폐기물공동처리장 (법인번호 : 116171-000856)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빌딩 3층
 대표자 : 안 성 국

귀 공제조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제(징소량징과-12068호) 대해 2014.11.05일 원장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이행완료"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다 음 —

1. 일 제 명 : (주)라진환경
2. 소 제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17-6, 402-17, 402-34 번지
3. 처리물량 : 전체 27,320톤 (조합 13,200톤, 토지주 14,120톤)
4. 처리기간 : 2014.06.24 ~ 2014.11.05(수)

2014년 11월 7일

용 인 시 장 (인)

방치폐기물처리 완료 확인서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사례2

(주)00기업

• 배 경

- 조합 제명 후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미 가입으로 허가취소, 이후 방치폐기물이 발생
※ 가연성폐기물 및 혼합건설폐기물 과다 적치로 인해 화재(자연발화) 발생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성상별 세부물량	
20,481톤 (허용보관량 23,000톤)	20,481톤 (허용보관량 1.5배 이내)	건설폐재류	13,690톤
		폐콘크리트	190톤
		가연성폐기물	6,601톤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조합 20,481톤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건설폐재류 및 폐콘크리트는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으로 위탁 처리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방치폐기물에 가연성폐기물의 혼합 비율이 상당하여 처리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웠음
- 해결방법 : 방치폐기물 성상판단 용역을 통해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 산정
※ 약 12개(톤백)의 시료를 채취하여 약 1개월간 성상분리작업 진행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방치폐기물 세부 성상 사진

• 처리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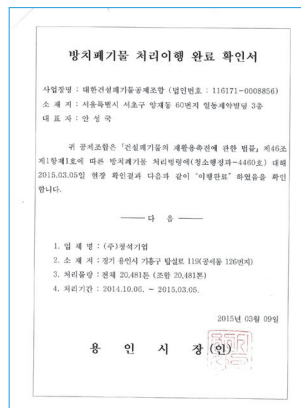
- 1) 방치폐기물 성상판단 작업 진행
 - 발주 설계를 위한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 판단
 - 분석기관 : 한국건설자원협회



-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20,481톤
 - 처리기간 : 2014.10월 ~ 2015.03월 (약 6개월)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방치폐기물처리 완료 확인서

02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폐기물재활용업)

사례1

○○자원

- 배 경
 -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비 고
폐합성수지 107.17톤 (허용보관량 78톤)	폐합성수지 107.17톤 (허용보관량 1.5배)	-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전체 107.17톤 (조합 전량처리)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위탁 처리



-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처리완료

1)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이행사항 확인 알림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107.17톤

* 조합전량 처리

- 처리기간 : 2016.09월(약 1개월 이내)



-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사례2

○○케미칼

- 배 경

-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비 고
폐합성수지 73.84톤 (허용보관량 135톤)	폐합성수지 73.84톤 (허용보관량 1.5배)	-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전체 73.84톤 (조합 전량처리)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위탁 처리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처리완료

1)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이행사항 확인 알림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73.84톤

* 조합전량 처리

- 처리기간 : 2018.07~8월(약 1개월 이내)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문제점 1) : 제품과 폐기물의 구분이 모호

⇒ 해결방법 1) : 지자체에 처리대상폐기물 명확화 요청→지자체·공제조합·방치행위자(폐기물처리업자)
3자간 입회하에 현장확인→폐기물처리범위 현장입회 확인서 발급→처리대상 폐기물
구분 완료

- 문제점 2) : 도로진입로 협소 / 사업장 진입시 인근 토지를 지나가야하는데 방치행위자와 인근
토지소유자간 불화로 인한 처리 지연

⇒ 해결방법 2) : 방치폐기물처리기간(2개월) 연장(1개월)을 통해 원만히 해결 / 기간내 처리곤란시
처리기간(2개월+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규정 필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생략)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문제점 3) : 폐기물이 자가부지와 임대부지에 걸쳐서 방치된 경우 / 토지소유자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선처리 해줄 것을 요청

⇒ 해결방법 3) : 자가부지는 공제조합이 처리하였으며, 임대부지는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03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폐기물재활용업)

사례1

○○에코

• 배경 및 경과

- 사업장 경매(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가 경매로 취득했으나 방치폐기물이 존재함에
따라 경락자와 행위자 간 법적 소송)

- 경락자 : 해당 지자체 및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문의

- 지자체 : 행위자인 ○○에코에 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 ○○에코 : 불이행

- 지자체와 공제조합 현장 확인 및 처리방법 협의 : 영업대상폐기물 및 방치된 폐기물의 성상 확인 후, 영업대상폐기물 중 폐전선은 없음으로 폐합성수지만 허용보관량의 1.5배 처리기로 협의
- 지자체 :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एको 형사고발
- 공제조합 : 영업대상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에 대하여 허용보관량의 1.5배 처리 완료 후 지자체에 처리실적 보고

• 현 황

- 영업대상 폐기물 및 허용보관량

대상폐기물	조합 처리물량	비고
폐전선	503.2톤	폐전선은 없음
폐합성수지	207톤	약 700여톤 추정

- 방치폐기물 처리예상량

대상폐기물	조합 처리물량	비고
폐합성수지	207톤×1.5 = 310.5톤	허용보관량×1.5

• 처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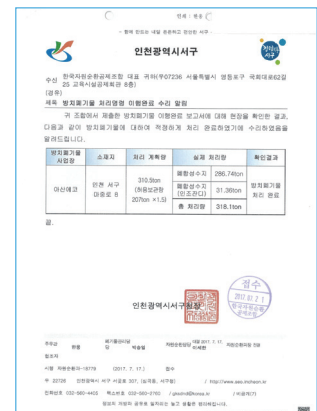
- 처리물량 : 전체 약 700여톤 중 공제조합에서 318.1톤 처리
- 처리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파·분쇄를 통한 시멘트 소성로 열원으로 재활용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공제조합 처리 후 남은 방치폐기물 존재
- 해결방법 : 경락자 처리 완료

• 처리완료

-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공문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물량 중 318.1톤 (7.6톤 초과 처리)
 - 처리기간 : 2017.07.4일 ~ 7일(4일)



방치폐기물처리 완료 공문



• 처리 전



• 처리 중



• 처리 후

◆ 방치폐기물 처리 사진

04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폐기물중간처분업)

사례1

(주)○○

• 배 경

- 조합원사 (주)○○의 부도로 인한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조합에서 '02.2~'03.09 방치폐기물 처리
- ※ 가연성폐기물 적치로 인해 화재(자연발화) 및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오염 발생 방지

• 현 황

총 발생량	성상별 세부물량	조합 처리물량
가연성폐기물 7,060톤	일반 950톤, 지정 6,110톤 ※ 지정폐기물 中 불법보관 3,000톤	4,060톤 (일반 950톤, 지정 3,110톤)

※ 미허가 보관시설 불법보관 3,000톤은 조합 처리대상에서 제외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가연성폐기물 4,060톤(일반 950톤, 지정 3,110톤)
- 처리방법 : 조합원사(15개사) 위탁 소각처리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참여 조합원사의 기존 반입폐기물 처리 정체 발생
- 해결방법 :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탁처리 참여 조합원사 보관기일 연장 조치 요청

현장사진1



처리 전(前)



처리 후(後)

현장사진2



처리 전(前)



처리 후(後)

현장사진3



처리 전(前)



처리 후(後)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V.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01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대상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연체·체납 등 경영상태 부실로 부도·폐업 우려 업체
-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관리가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는 보증보험 가입 업체
- 임시보관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 등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0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착안사항

구분	주요 내용
방치 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 보관 불가 (필요시 측량 실시)2) 폐기물의 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표지판 설치3) 폐기물처리시설(파쇄·분쇄 등)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4) 수탁 처리능력에 비해 폐기물을 초과하여 받고 있는지 확인 -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5)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방법의 적정여부 확인 - 허용보관량 대비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확인6) 소각재(바닥재,비산재) 적치량 및 적정여부 확인 - 소각재 다량 적치 시 방치폐기물 발생우려7) 폐기물 재활용 시 발생하는 잔재물의 적정처리여부 확인 - 잔재물 다량 적치 시 방치폐기물 발생우려8) 수급불균형(반입폐기물/생산제품) 여부 확인 -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폐기물 또는 제품 적치시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03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사례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 허용보관량 초과

- 허용보관량 초과 시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허용보관량 이내로 처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점검 필요

※ 확인방법 : 적치보관량 산출을 위한 측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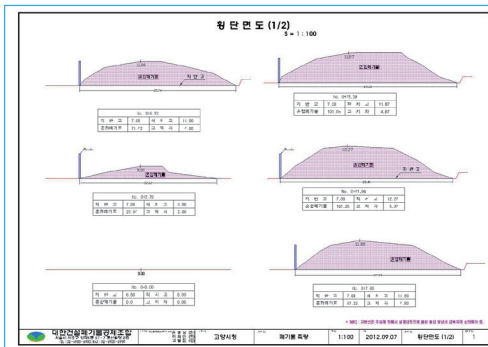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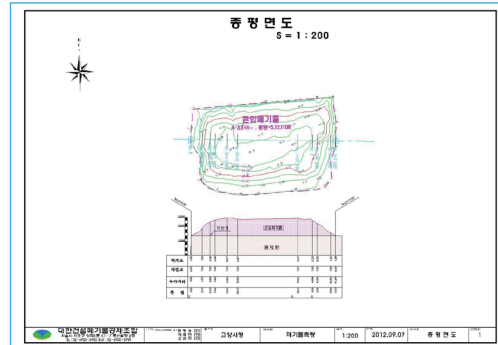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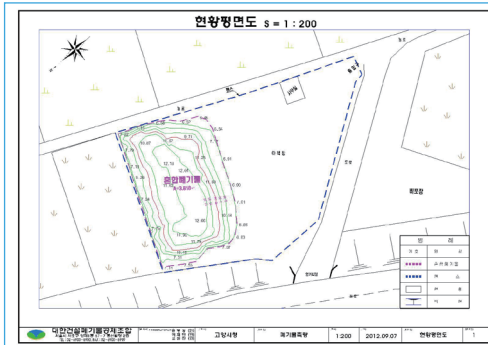
<허용보관량 초과 상태>

<허용보관량 이내 처리>

• 보관량 산출 방법

-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부피)을 계산한 후 폐기물종류별 비중을 곱하여 허용보관량을 산정





속 집	거 리(m)	단면적(m ²)	평균단면적(m ²)	폐기물보관량(m ³)	비 고
No.0+0.00	0.0	0.0	0.0	0.0	
+3.70	3.7	23.5	11.8	43.5	
+6.33	2.6	71.4	47.5	124.9	
+7.96	1.6	87.2	79.3	129.3	
+11.86	3.9	101.3	94.2	367.5	
+15.39	3.5	101.1	101.2	357.1	
+35.16	19.8	101.4	101.2	2000.8	
+40.00	4.8	84.4	92.9	449.5	
+41.54	1.5	73.4	78.9	121.5	
+45.96	4.4	20.3	46.9	207.2	
+47.59	1.6	0.0	10.2	16.6	
계				3,818	m³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실제 비중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한다.

• 공제조합 지도점검 결과 필요시 허가기관 특별관리 건의

- 공제조합 지도점검 결과 허용보관량 초과, 신용상태 불량, 도산의 위험성 및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허가기관에 특별관리 요청

<p style="text-align: center;">요청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입량 제한 2. 일정기간 반입 금지 3. 특별점검 	➡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을 정확히 명시하여 허가기관에 공문서로 요청</p>
--	---	---

- 각 공제조합들은 보증보험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활동 시행

• 폐기물 보관 장소 원지반 확인

- 석축 또는 옹벽 상단 밑 부분은 원지반이라고 주장하나, 대부분 폐기물로 적치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 필요
 ※ 확인방법 : 원지반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등으로 확인 필요시, 건설장비(굴삭기) 등으로 굴착하여 원지반 확인



<원지반 확인 필요>

<굴착하여 원지반 확인>

• 가연성폐기물 및 혼합건설폐기물 과다 적치

- 전체 보관량이 허용보관량 이내로 적치되어 있어도 방치폐기물 발생 시 고액의 처리비용이 발생함으로 적정 보관 유도 필요

※ 관리방안 : 가연성폐기물이 장기간 및 다량으로 적치되지 않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필요



<처리 전>

<처리 후>

•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보관 여부 확인

-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성상별로 보관 장소를 구분하여 경계 및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



<성상 구분 없이 혼합 적치>

<경계 구분 및 보관표지판 설치>

• 사업장 내·외부에 폐기물 매립 및 적치 여부 확인 필요

- 허가받은 사업장부지 안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측량 및 지적도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산 법면부에 매립>

<노출 후 전량 처리>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사업장 내 폐기물 야적(옥외보관)

- 폐기물이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내 야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관시설내 폐기물 보관을 유도하여 시정조치



<폐기물 옥외보관>



<보관시설 내 폐기물 보관>



• 반입불가(이행보증대상폐기물 외) 폐기물의 반입

- 이행보증대상폐기물인 폐타이어 외 폐합성수지의 반입사실이 확인되어 이행보증대상폐기물 준수를 유도하여 시정조치



<반입불가폐기물 반입>



<이행보증대상폐기물 준수>

- 폐기물 잔재물 적치

- 폐기물 재활용시 발생하는 잔재물이 적치됨에 따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시정조치



<폐기물 잔재물 적치>



<폐기물 잔재물 적정처리>

-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방치폐기물 분담금 납부후 재 위탁처리

- 00 중간처분업체는 초과보관량(1,569.59톤)이상으로 폐기물을 재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승인 받아 처리하면서 허용보관량 초과분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763,386천원)하여 처리기간 내 처리
- 처리 기간 : 2018.11.5. ~2019.2.14.(100일간)
- 처리사항 : 방치폐기물 환급신청에 따른 폐기물처리여부를 확인하여 환급금 지급처리
- 보증보험에 분담금 납부한 경우 반드시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폐기물 보관상태 확인결과 처리완료 현황

04 방치폐기물 처리주체별 조치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도·양수한 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권을 양도·양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제33조 및 「건설폐기물법」제31조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책임도 양도·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안내 공문발송 • 양도·양수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조치명령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사유와 행정대집행 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보 • 양도·양수자가 안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실시 • 행정대집행으로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처리비용 회수
폐기물을 방치한 행위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자의 재산상태 등을 추적 조사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보 • 폐기물 방치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실시 • 행정대집행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구상권을 행사
토지소유자 또는 소유권을 양도·양수한 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자에게 「폐기물관리법」제48조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가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 • 같은 법 또는 조례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 경우 예상되는 행정대집행의 사유와 절차 등을 통보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처리 및 구상권 행사
법원경락을 통하여 인수한 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경락을 통하여 허가권이나 토지소유권을 인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제33조 및 「건설폐기물법」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안내 공문을 발송 • 인수한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 경우 예상되는 행정대집행의 사유와 절차 등을 통보하고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실시 및 구상권 행사
처리주체를 다양하게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주체(처리비용 확보가 가능한 자)별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 • 비용분담 방안을 토대로 처리주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시행(각 처리의무자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가능)

구분	주요 내용
처리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 추진 - 운반비 등 불가피한 비용은 행정대집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업체를 선정·유치하고,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 - 지원비용은 행정대집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 부도업체에 대한 채권을 지자체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후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부도업체 입찰을 통하여 채권과 처리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

05 방치폐기물 관리주체별 관리방안

구분	주요 내용
공통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또는 지방세 납부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통보 받아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연체하거나 체납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실태를 중점적으로 관리 • 연체 또는 체납을 인지한 날로부터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특별단속 실시 등의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폐업 신고 등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방치폐기물은 사전에 적정 처리토록 조치한 후 관련 행정행위를 집행
	<p>▶ 허가취소 시 조치사항(영업정지 시에도 사전 조치)</p> <pre> graph LR A[허가취소 사유발생] --> B[폐기물 반입 중지명령] B --> C[폐기물 보관량 확인] C --> D[보관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E[잔여폐기물은 처리 의무자에게 조치명령] --> F[미처리시 이행보증 처리추진] F --> G[이행여부 확인] </pre>
	<p>▶ 휴업 및 폐업신고 시 조치사항</p> <pre> graph LR A[휴업신고(폐기물처리계획서 적정여부 확인)] --> B[폐기물반입 중지명령] B --> C[폐기물 보관량확인] D[이행완료시 신고 수리] --> E[이행여부 확인] E --> F[보관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pre>
	<p>▶ 부도 등 발생 시 조치사항</p> <pre> graph LR A[업체부도] --> B[폐기물 보관량 현지확인] B --> C[보관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C --> D[미이행시 고발조치] E[미처리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 실시] --> F[양수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pre>
	<p>※ 방치폐기물은 발생형태가 다양하므로 각 사안별로 적정조치방안 강구</p>

구 분	주 요 내 용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업체별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 -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폐기물 방치우려가 높은 사업장 • 폐기물 종류별 배출주기, 종류별·주기별 배출량 등 배출실태를 토대로 중점관리기간을 설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 배출주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되, - 폐기물 보관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토록 권고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제품 생산능력과 제품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반입 또는 보관량 등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관중인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시행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되는 일평균 폐기물량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일평균 처리능력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판단 • 허용보관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평균 반입물량을 제한하도록 해당 업체에 행정지도를 실시 • 허용보관량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허용보관량을 초과 시 공통사항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보관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보관 가능한 량보다 허용보관량을 축소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 허가(또는 신고)된 보관장소(또는 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또는 시설)에 불법 보관하는 업체 •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보관량을 축소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는 범위반에 따른 처분과 초과보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필요시 변경허가토록 조치) -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65조제10호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한편, 영업정지를 병행하여 처분

VI. 협조 사항

※ 허용보관량 초과 적치 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추가 조치 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01 보험금액 조정 또는 보험계약 갱신 조치 필요

-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기간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 시(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필요
 -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여 갱신 필요
 - 보험금액 산출기준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0
 -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종류별 기준단가를 적용
-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5호) 참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01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확인

- 허가·승인 또는 신고 시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량(보관용적×비중)을 확인 또는 측량(계측)하여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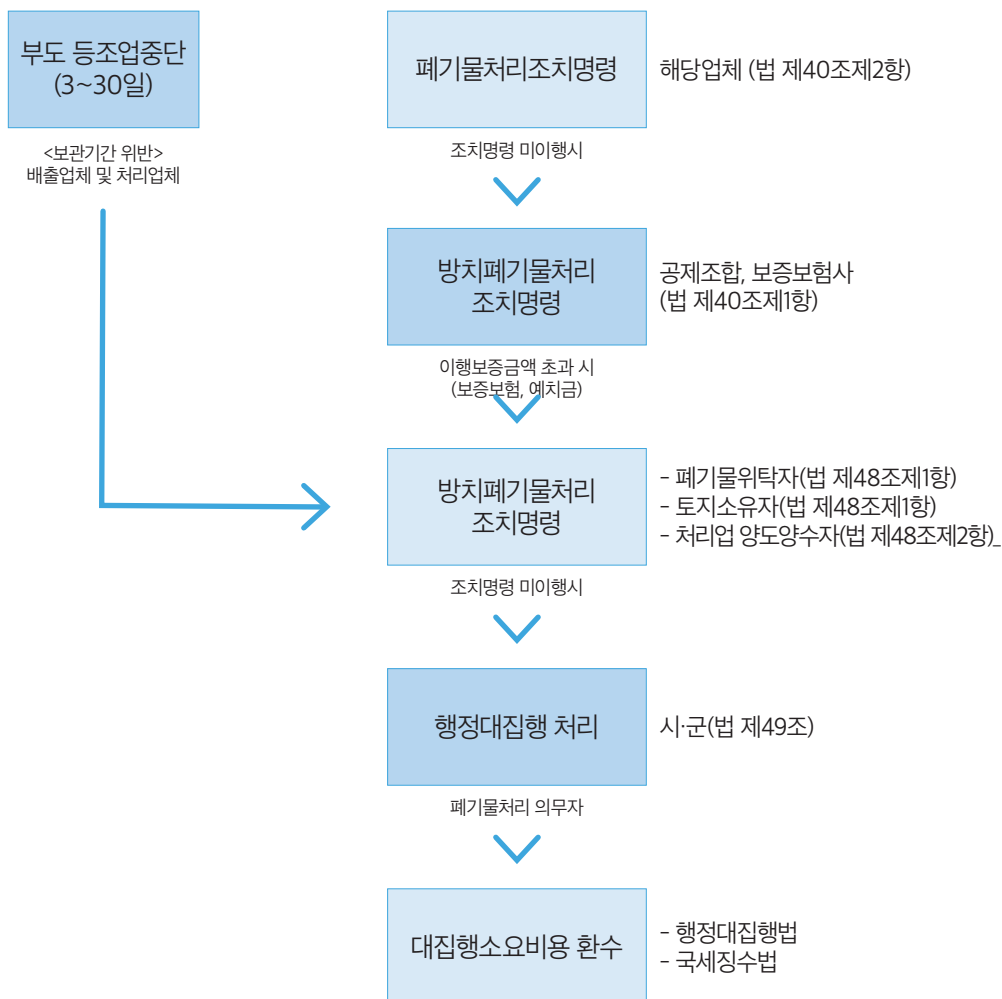
02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조치 및 공제조합 그 사실을 통보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초과 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 필요
-

VII. 관련 법령 및 참조사항

01 폐기물관리법

-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부도 등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미이행된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처리를 명하였음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지칭함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참조)



• 참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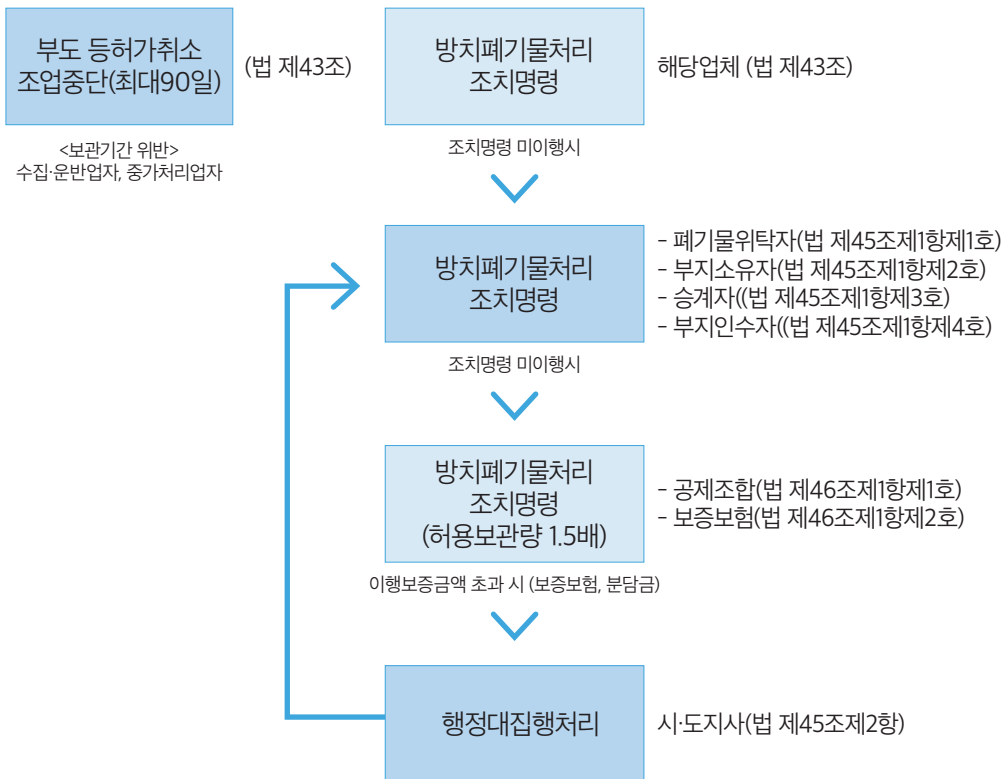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0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건설폐기물)

-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건설폐기물법 제2조제6호)



• 참조법령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참조 01

의료폐기물 관련 사항(폐기물관리법)

01 의료폐기물이란 ?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함

02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등
-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
- 주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의과,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의 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 (의과,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의 기관)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직은행
-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과,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의 기관)

참조 02

관련기관 및 각 공제조합 연락처

소 속	담당부서	전화연락처	비고
환 경 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044-201-7375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17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18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5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410-5203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35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043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44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사 무 국	02-6900-6900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 무 국	02-718-7900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사 무 국	042-826-5935~7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사 무 국	02-2689-0592~3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사 무 국	044-623-5553 ~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0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11,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476,000
폐페인트 및 페락카	261,000
폐농약, 폐유독물	512,000
폐석면	511,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798,000
폐산, 폐알칼리	261,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08,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13,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88,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108,000
건설폐기물	43,000
의료폐기물	772,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170,000
식물성잔재물		126,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263,000
	기 타	213,000
폐윤활유		70,000
폐촉전지		65,000
페드럼(원/개)		300
폐산, 폐알칼리		197,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42,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26,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38,000
폐전선		171,000
폐오일필터		41,000
페타이어		67,000
폐플라스틱 용기		48,000
폐규조토, 폐점토		50,000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페인트		161,000
광재	일반	89,000
	지정	109,000
분진	일반	89,000
	지정	109,000
폐합성수지	단일품목	49,000
	혼합품목	219,000
폐합성섬유		54,000
폐식용유		37,000
폐아연		41,000
폐유 (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211,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89,000
	지정	109,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39,000
폐촉매		39,000
폐합성고무		86,000
철강슬래그		38,000
폐주물사, 폐사		44,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39,000
폐섬유류		52,000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63,000
	피혁가공잔재물	105,000
폐석회, 폐석고		39,000
폐목재		45,000
음식물류폐기물		112,000
의료폐기물		631,000

비고 : 폐기물 종류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0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95,000
동물성잔재물	106,000
식물성잔재물	79,000
유기성오니	78,000
폐지, 고철, 폐포장재	0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01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및 이행보증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자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자,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시행규칙 [별표기 비고6에 해당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 중 단서에 해당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자 그리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음.

나. 대상업무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 대상, 이행보증금 산정, 이행보증 시기 및 방법, 미이행업체에 대한 처분 등 이행보증과 관련한 사항

(2) 방치폐기물의 처리관련 업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한 업체에서 방치폐기물 발생시 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주체, 처리대상 범위 및 처리절차 등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방치폐기물

- (1)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한 경우, 시·도지사(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허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법 제40조제2항)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건설폐기물법 제2조제6호)

나.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건설폐기물중간처분업자
 -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을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해당 업체의 1일 처리능력 1일분이상 30일분이하에 해당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량

다.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이하 “허용보관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등)

4. 이행보증 시기 및 범위

가. 법 제40조와 건설폐기물법 제42조에 따른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 영업시작(건설폐기물중간처분업자는 사용시작신고) 전까지(폐기물을 수탁하기 전까지)
-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임시보관장소로 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한 경우에도 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의 범위

-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의 1.5배
 - 폐기물처리 신고자
 - 신고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보관량)의 1.5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의 1.5배
 - 이행보증 대상 보관량의 산정
 - 보관량은 해당 업체에서 보관하고자 하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가능한 최대용량을 허용보관량 등으로 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중 창고나 용기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면적과 동 면적에서 보관 가능한 높이를 고려한 보관용적을 허용보관량 등으로 한다.
- (2) 초과보관량(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 해당업체의 허용보관량의 1.5배와 초과보관량의 3배

다. 이행보증 방법 : 법 제40조제1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 (1) 법 제43조나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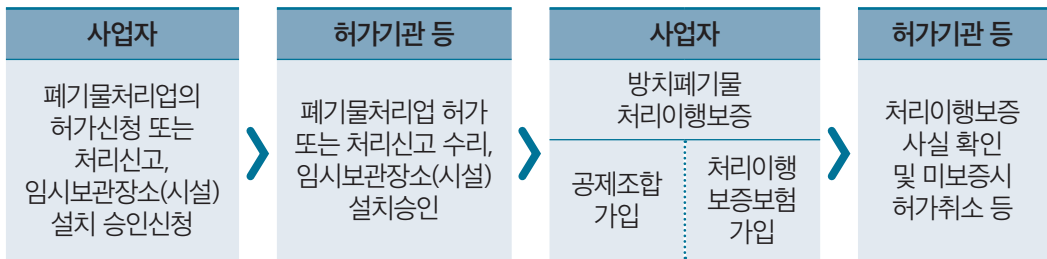
02 보증절차

1. 관련규정 : 법 제40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4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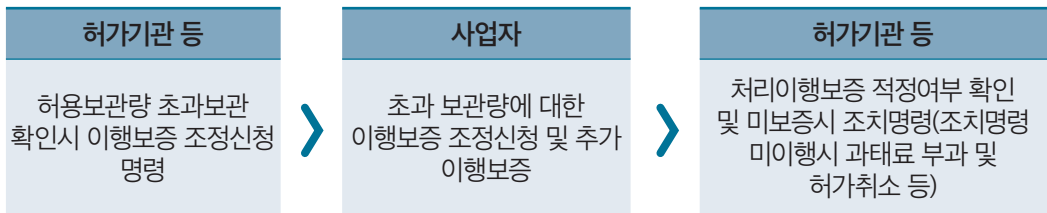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사업자(이하 “이행보증 대상자”라 한다)는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이행보증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이하 “이행보증”이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증대상

(1) 허용보관량 범위 내에서의 이행보증



(2)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1)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을 개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사용 시작신고)하기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나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허가기관 등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임시 보관장소 또는 임시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을 한 후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보증 없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가. 이행보증대상자가 업종별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결성한 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공제조합 가입자”라 한다)와 공제조합에서는 분담금 납부사실을 허가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탈퇴신청을 하거나 제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허가 기관 등에 통보토록 공제조합에 요청한다.
- 공제조합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제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지체없이 다른 이행보증방법(법 제40조제1항제2호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을 한 후 관할 허가기관 등에 보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허가기관등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통보될 경우 해당자의 폐기물 반입 및 보관현황 등을 점검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처분과 함께 초과보관량을 포함하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허가기관 등은 공제조합가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초과 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험의 가입기간

(1) 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연도 단위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은 보험가입기간과 보증기간(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최초 가입일자가 회계연도 중일 경우에는 익년 말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고, 동 가입기간에 60일의 보증기간을 가산

예) 2011.11.20일 영업개시일로 1년 기간으로 보험가입시(가입기간 : 2011.11.20 ~ 2012.12.31, 보증기간 : 20011.11.20 ~ 2013.3.1)

(2)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는 보험가입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회계연도 단위로 하고,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의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액을 산출하되, 처리단가는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종류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 허용보관량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1.5
 - 허용보관량 초과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0
 - 보험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다. 보험가입시 보험금 수령인 지정

- (1) 이행보증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허가기관등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험에 실제로 가입하는 이행보증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보험금액 조정 또는 보험계약 갱신

- (1) 다음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갱신일 또는 재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지도 점검 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변경허가 대상) 또는 처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단가 변경(관련고시 개정)
 - 허용보관량의 변경(변경허가 대상)
 -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 (2)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8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계약갱신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보증보험계약의 갱신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1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3)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기간(보증기간이 아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보험가입자가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법 제40조제8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계약 갱신을 명한 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갱신 기한 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보험가입자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허가 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허가 기관 등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 갱신계약 시 아래에 따라 보험계약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시 보험기간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 시 (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보험약관 심사방법

- (1) 허가 기관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인출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가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이행보증 대상자에게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4. 관련서류 작성요령

가. 산출내역서

- (1) 폐기물 종류별로 허용보관량을 각각 산출한다.
 - (2) 폐기물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하되, 고시된 품목에 해당품목이 없을 경우는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유사한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한다.
-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허용보관량이 폐유 5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폐페인트 300톤인 경우의 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 종류	허용 보관량	처리단가(예시)	안전율	산출금액
폐유	50톤 ×	211,000원/톤	× 1.5 =	15,825,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	476,000원/톤	× 1.5 =	71,400,000원
폐페인트	300톤 ×	261,000원/톤	× 1.5 =	117,450,000원
계				204,675,000원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유 2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을 보관하는 경우 초과보관량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 종류	허용 보관량	처리단가(예시)	안전율	산출금액
폐유	20톤 ×	211,000원/톤	× 3 =	12,660,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 ×	476,000원/톤	× 3 =	14,280,000원
계				26,940,000원

6. 이행보증의 적정여부 검토요령

가. 최초 이행보증 및 조정사유 발생시

-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보관시설 설치승인서의 허용보관량과 일치여부 확인
 -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 환경부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 (3) 현장 확인
 - 허가·승인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으로 한다)시 제출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형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보관형태 :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폐기물 보관형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관중인 폐기물더미의 밀면적과 높이 등이 허가등을 위해 제출한 면적 및 높이 이내인지 확인한다(필요한 경우 계측을 실시한다).
 -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을 계산한 후 폐기물종류별 비중을 곱하여 허용보관량을 산정한 후 초과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실제 비중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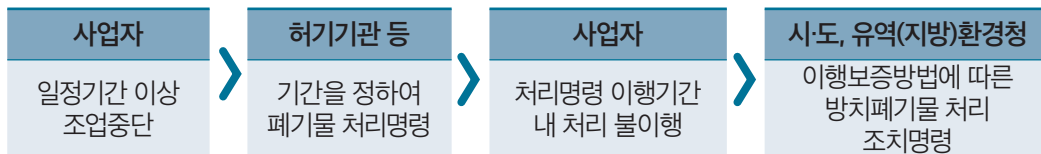
-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한 경우
 - 당초 제출된 보관시설 등의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당초 보관형태대로 변경하여 보관토록 조치한 후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도 점검시

- (1)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최초 이행보증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량(보관용적 × 비중)을 확인 또는 계측하여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 필요시 실제 보관량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및 초과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보관여부 확인
 -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반입폐기물을 바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며, 허가 기관 등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3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처리절차>



1. 조업정지시의 폐기물처리명령 요건(법 제40조제2항, 건설폐기물법 제43조제1항)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이상 조업을 중단(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 경우

※ 조업중단 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 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업중단 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1) 동물성잔재물 및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그 밖에 쉽게 부패·변질되는 폐기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판단기준
 - 보관용기 부식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등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3일 이상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명령 가능 (3) (1) 및 (2) 외의 경우 : 1월

나. 건설폐기물의 경우

-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을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다.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 지정

- (1) 허가 기관 등은 폐기물량과 환경오염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명령 기간을 1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등은 1월의 기간이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명령 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다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처리명령 기간내에 자체처리가 곤란하여 재위탁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위탁처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을 승인할 수 있다.

2. 이행보증 방법별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조치

가.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 처리를 명령하여도 처리명령 기간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일 경우 허가기관등은 다음의 방법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이행보증 방법별 조치절차

(1)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 허가 기관 등이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허가 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 기관 등이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할 수 있는 처리량

- 폐기물처리업자 방치폐기물 :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 폐기물처리 신고자 방치폐기물 : 신고 보관량의 1.5배 이내
-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 건설폐기물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제조합은 처리명령 기한내에 방치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허가 기관 등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허가 기관 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기간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명령과 함께 법 제65조나 건설폐기물법 제63조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가 공제조합에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그 시점에서 폐기물보관량을 확인하여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이행보증금액 등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히,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즉시 보관폐기물량을 조사하여 이행보증대상자에게 처리를 명하는 한편, 그 사실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고, 이행보증대상자가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즉시 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 보험금은 허가기관등에서 수령한 후 방치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이하 “위탁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허가기관 등이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다.
-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 실제 처리한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한다.
 - 위탁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후 허가기관등에 보고하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임장을 발급하고, 보험회사에 위임장 소지자에게 정해진 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통보한다.

(3) 이행보증조치로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 허가 기관 등은 조업정지 등에 따른 처리명령시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보관량과 함께 수탁관련 자료(반입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는 등 방치폐기물이 처리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04 행정사항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현황 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반기말 현재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허가등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할 시·군·구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2.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5일까지(하반기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 및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61호, 2012.8.8>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칙 <제553호, 2015.8.10>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호, 2016.12.>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

1. 총괄표(업소수)

구 분		계	공제조합가입	폐기물처리 보증보험가입
계				
수집 운반업	소 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	소 계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전문		
		기계적 처리전문		
		화학적·생물 학적 처리전문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재활용 전문		
		재활용 이외		
	의료폐기물			

구 분		계	공제조합가입	폐기물처리 보증보험가입
계				
최종 처분업	소 계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처분업				
재활용업	소 계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처리이행보증방법별 업소명단

가. 공제조합가입

구 분	업소수	업소명	조합명	가입일자	이행보증 폐기물량(톤)	비 고 (업종)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구 분	업소수	업소명	조합명	가입일자	이행보증 폐기물량(톤)	비 고 (업종)
계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자						

* 이행보증 폐기물량은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물량(허용보관량 × 1.5)을 기재

* 비고는 처리대상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을 기재

나.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구 분	업소수	업소명	보증보험 계약기간	보험금액 (천원)	비 고 (업종)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구 분	업소수	업소명	보증보험 계약기간	보험금액 (천원)	비 고 (업종)
계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업					
폐기물처리 신고자					

* 비고는 처리대상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을 기재

* 보험가입기간은 보험 계약기간과 보증기간(60일)을 합한 전체 기간으로 작성(예, 2012. 8.12~2014.3.1)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

(단위 : 톤)

관할 행정 기관	업소명	소재지	업종	이행 보증 방법	발생현황				처리현황			잔량	향후 처리계획 및 처리방법	비고		
					폐기물 종류	발생 일차	발생 원인	폐기물 종류	처리 일자	처리 량	처리 방법					
															발생량	발생 일차

※ 작성요령

- 1) 발생일자는 조업중단 후 처리명령 시 정한 처리기간일 다음날을 기재
- 2) 이행보증방법 : **공제조합 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구분하여 작성
- 3) 방치폐기물 처리현황 : 처리량은 신규 발생 방치폐기물 중 폐기물종류별 처리한 량을 기재. 처리방법은 행정대집행, 조치명령(처리업자, 토지소유자, 경락자 등), 이행보증금(**조합분담금**, 보증보험)으로 구분 기재
- 4) 잔량 : 신규 발생량 중 처리한 양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폐기물 양을 기재
- 5) 향후 처리계획 및 처리방법 : 행정대집행, 조치명령(처리업자, 토지소유자, 경락자 등), 이행보증금(**조합분담금**, 보증보험)으로 구분 기재
- 6) 비고 : 보관상태, 처리완료 예정일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디자인 · 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대표)

Contents



I . 공제조합 소개	02
II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03
III .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06
IV . 방치폐기물 처리사례	07
V .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20
VI . 협조 사항	30
VII . 관련 법령 및 참조 사항	31
부 록	
0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7
02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41

I. 공제조합 소개

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47조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1999. 12. 설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보증하는 기관

02 「폐기물관리법」제41조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2000. 1. 설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중 소각전문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기관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1999. 11. 설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중 재활용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기관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2014.10. 설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중 재활용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기관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2000.12. 설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중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처리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을 보증하는 기관
-

II.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이 개 요

- (정의)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
-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 (가입현황) 전체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대상 업체 중 공제조합 가입률이 업체수로는 22.7%, 금액으로는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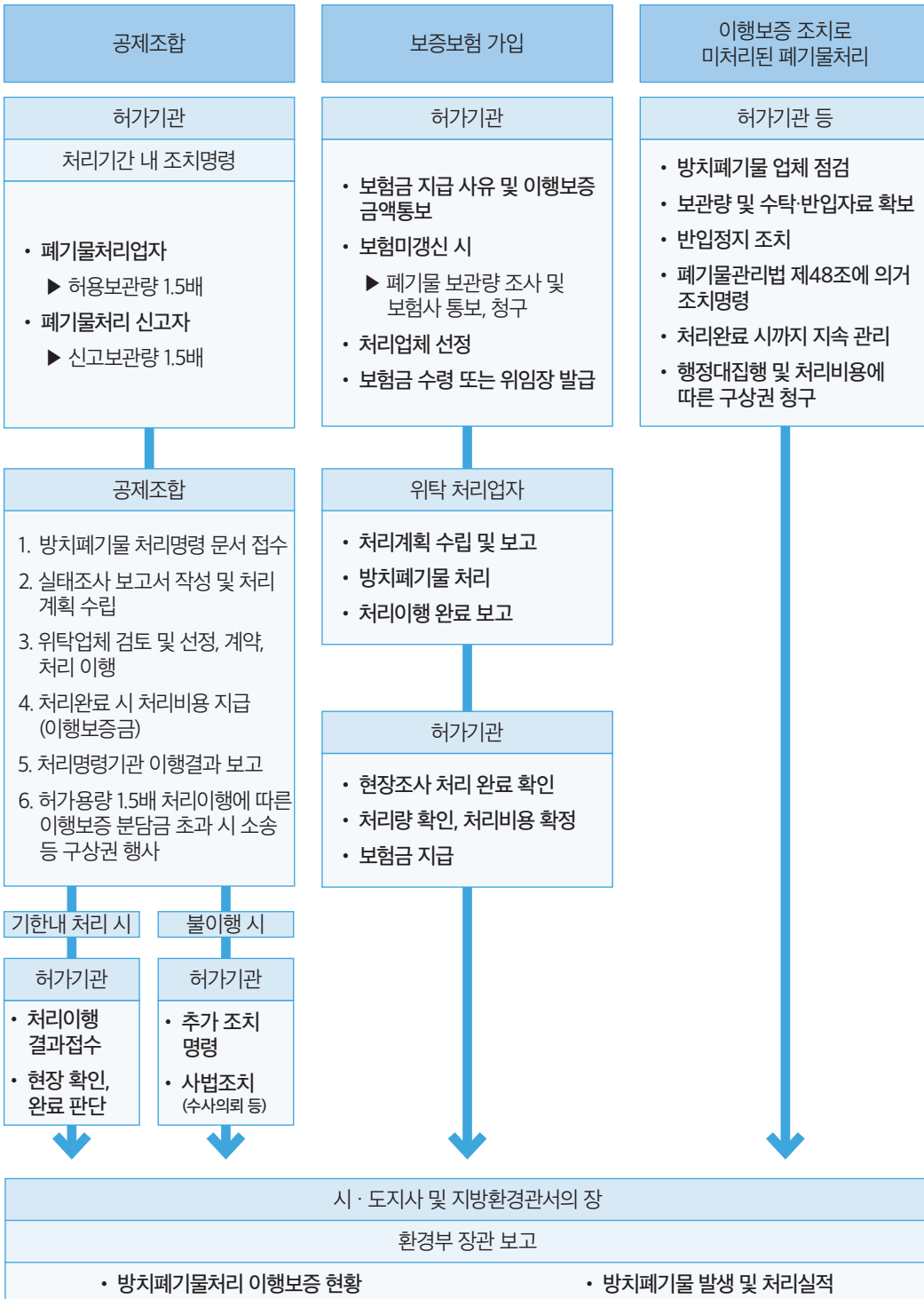
(‘16.12월 기준)

구 분	계		공제조합		보증보험	
	업체수 (개소)	가입금액 (백만원)	업체수 (개소)	가입금액 (백만원)	업체수 (개소)	가입금액 (백만원)
계	6,512	558,753	1,476	29,676	5,036	529,077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577	76,707	347	16,025	230	60,682
수집운반업	339	10,454	39	58	300	10,396
폐기물중간처분업	211	37,385	68	3,373	143	34,012
폐기물중간재활용업	1,288	108,923	178	990	1,110	107,933
폐기물최종재활용업	306	14,335	53	520	253	13,815
폐기물종합재활용업	3,808	310,949	815	8,710	2,993	302,239

- (이행보증 방법)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참조

구분	공제조합	보증보험
보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납부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안전율 (1.5 또는 3.0) × 보관량별 요율(0.1~0.9)* * 허용보관량에 따라 차별 적용(건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안전율 (1.5 또는 3.0) × 보험요율(0.082~0.329%)* *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 적용
사전 후 예방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등 실시(연 1회 이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에 대해 채권 확보 등 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예방조치 없음 지자체 이행보증 조치 통보에 따라 보증범위내 처리비 부담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 등을 통한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관리 가능 정부와 정보교류 및 소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금 납부로 업체의 비용부담이 적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분담금 부담이 큼 공제조합 점검에 따른 업체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미흡

02 이행보증 절차



Ⅲ.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01 개요

- (정의) 행정대집행은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치폐기물처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인 원인자, 토지주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
- (관련근거) 행정대집행법('54. 3월 제정, '54. 10월 시행)
 - ※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대집행의 절차 등 9개 조문으로 구성
 - 대집행에 관하여는 각 개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 밖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일반적으로 적용
 -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강제하고 제재를 수반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제정되어 거의 개정되지 않음 (2019.4월 현재 총 3회 개정)

02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절차



IV. 방치폐기물 처리 사례

01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례1

(주)○○환경

• 배 경

-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미 이행 및 보관시설기준 미달로 허가취소 이후 방치폐기물 발생
- 사업장 부지 내에 지하 약 3m까지 매립폐기물을 허가기관 및 토지주 입회하여 확인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토지주 처리물량
27,320톤 (허용보관량 8,800톤)	13,200톤 (허용보관량 1.5배)	14,120톤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전체 27,320톤 (조합 13,200톤, 토지주 14,120톤)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로 전량 재활용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1) : 사업장 부지 내 매립폐기물 위에 약 1~3m 복토하여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음
⇒ 해결방법 1) : 처리 구간을 나눠서 매립폐기물 처리 후 처리된 구간에 복토하여 순차적으로 처리 완료
- 문제점 2) : 토지주(3명) 처리비용 분담 비율 의견
⇒ 해결방법 2) :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 금액을 조정하여 분쟁을 해결

총 발생량 27,320톤 (매립폐기물 포함)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굴착을 통해 확인된 매립폐기물 (허기기관 및 토지주 입회)

• 처리완료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27,320톤

* 조합 13,200톤, 토지주 14,120톤

- 처리기간 : 2014.06월 ~ 11월(약 6개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완료 확인서

사업장명 : 태안건설폐기물공동처리장 (법인번호 : 116171-000856)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빌딩 3층
 대표자 : 안 성 국

귀 공제조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제(징소양정과-12008호) 대해 2014.11.05일 원장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이행완료"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다 음 —

1. 일 제 명 : (주)라진환경
2. 소 제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17-6, 402-17, 402-34 번지
3. 처리물량 : 전체 27,320톤 (조합 13,200톤, 토지주 14,120톤)
4. 처리기간 : 2014.06.24 ~ 2014.11.05(수)

2014년 11월 7일

용 인 시 장 (인)

방치폐기물처리 완료 확인서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사례2

(주)00기업

• 배 경

- 조합 제명 후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미 가입으로 허가취소, 이후 방치폐기물이 발생
※ 가연성폐기물 및 혼합건설폐기물 과다 적치로 인해 화재(자연발화) 발생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성상별 세부물량	
20,481톤 (허용보관량 23,000톤)	20,481톤 (허용보관량 1.5배 이내)	건설폐재류	13,690톤
		폐콘크리트	190톤
		가연성폐기물	6,601톤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조합 20,481톤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건설폐재류 및 폐콘크리트는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으로 위탁 처리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방치폐기물에 가연성폐기물의 혼합 비율이 상당하여 처리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웠음
- 해결방법 : 방치폐기물 성상판단 용역을 통해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 산정
※ 약 12개(톤백)의 시료를 채취하여 약 1개월간 성상분리작업 진행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방치폐기물 세부 성상 사진

• 처리완료

1) 방치폐기물 성상판단 작업 진행

- 발주 설계를 위한 가연성폐기물 혼합 비율 판단

- 분석기관 : 한국건설자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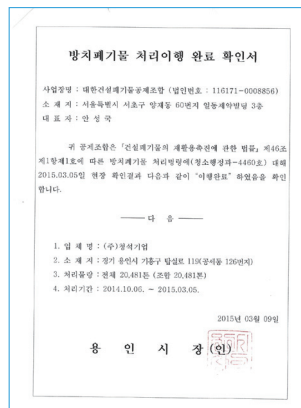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확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20,481톤

- 처리기간 : 2014.10월 ~ 2015.03월 (약 6개월)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방치폐기물처리 완료 확인서

02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폐기물재활용업)

사례1

○○자원

- 배 경
-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비 고
폐합성수지 107.17톤 (허용보관량 78톤)	폐합성수지 107.17톤 (허용보관량 1.5배)	-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전체 107.17톤 (조합 전량처리)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위탁 처리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처리완료

1)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이행사항 확인 알림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107.17톤

* 조합전량 처리

- 처리기간 : 2016.09월(약 1개월 이내)



-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사례2

○○케미칼

- 배 경

-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

- 현 황

총 발생량	조합 처리물량	비 고
폐합성수지 73.84톤 (허용보관량 135톤)	폐합성수지 73.84톤 (허용보관량 1.5배)	-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전체 73.84톤 (조합 전량처리)

- 처리방법 : 공개입찰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위탁 처리



◆ 방치폐기물 발생 현장 사진

• 처리완료

1)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이행사항 확인 알림문서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73.84톤

* 조합전량 처리

- 처리기간 : 2018.07~8월(약 1개월 이내)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문제점 1) : 제품과 폐기물의 구분이 모호

⇒ 해결방법 1) : 지자체에 처리대상폐기물 명확화 요청→지자체·공제조합·방치행위자(폐기물처리업자)
3자간 입회하에 현장확인→폐기물처리범위 현장입회 확인서 발급→처리대상 폐기물
구분 완료

- 문제점 2) : 도로진입로 협소 / 사업장 진입시 인근 토지를 지나가야하는데 방치행위자와 인근
토지소유자간 불화로 인한 처리 지연

⇒ 해결방법 2) : 방치폐기물처리기간(2개월) 연장(1개월)을 통해 원만히 해결 / 기간내 처리곤란시
처리기간(2개월+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규정 필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생략)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문제점 3) : 폐기물이 자가부지와 임대부지에 걸쳐서 방치된 경우 / 토지소유자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선처리 해줄 것을 요청

⇒ 해결방법 3) : 자가부지는 공제조합이 처리하였으며, 임대부지는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03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폐기물재활용업)

사례1

○○에코

• 배경 및 경과

- 사업장 경매(폐기물처리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가 경매로 취득했으나 방치폐기물이 존재함에
따라 경락자와 행위자 간 법적 소송)

- 경락자 : 해당 지자체 및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문의

- 지자체 : 행위자인 ○○에코에 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 ○○에코 : 불이행

- 지자체와 공제조합 현장 확인 및 처리방법 협의 : 영업대상폐기물 및 방치된 폐기물의 성상 확인 후, 영업대상폐기물 중 폐전선은 없음으로 폐합성수지만 허용보관량의 1.5배 처리기로 협의
- 지자체 :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एको 형사고발
- 공제조합 : 영업대상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에 대하여 허용보관량의 1.5배 처리 완료 후 지자체에 처리실적 보고

• 현 황

- 영업대상 폐기물 및 허용보관량

대상폐기물	조합 처리물량	비고
폐전선	503.2톤	폐전선은 없음
폐합성수지	207톤	약 700여톤 추정

- 방치폐기물 처리예상량

대상폐기물	조합 처리물량	비고
폐합성수지	207톤×1.5 = 310.5톤	허용보관량×1.5

• 처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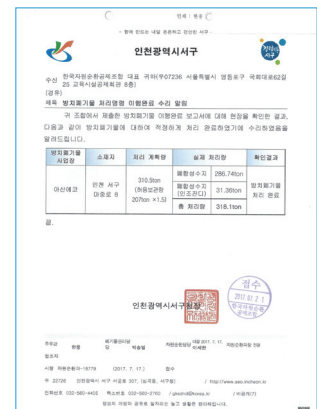
- 처리물량 : 전체 약 700여톤 중 공제조합에서 318.1톤 처리
- 처리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조합원 위탁처리
- ※ 파·분쇄를 통한 시멘트 소성로 열원으로 재활용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공제조합 처리 후 남은 방치폐기물 존재
- 해결방법 : 경락자 처리 완료

• 처리완료

-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완료 공문 발급
 - 처리물량 : 전체 물량 중 318.1톤 (7.6톤 초과 처리)
 - 처리기간 : 2017.07.4일 ~ 7일(4일)



방치폐기물처리 완료 공문



• 처리 전



• 처리 중



• 처리 후

◆ 방치폐기물 처리 사진

04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폐기물중간처분업)

사례1

(주)○○

• 배 경

- 조합원사 (주)○○의 부도로 인한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조합에서 '02.2~'03.09 방치폐기물 처리
- ※ 가연성폐기물 적치로 인해 화재(자연발화) 및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오염 발생 방지

• 현 황

총 발생량	성상별 세부물량	조합 처리물량
가연성폐기물 7,060톤	일반 950톤, 지정 6,110톤 ※ 지정폐기물 中 불법보관 3,000톤	4,060톤 (일반 950톤, 지정 3,110톤)

※ 미허가 보관시설 불법보관 3,000톤은 조합 처리대상에서 제외

• 처리 방법

- 처리물량 : 가연성폐기물 4,060톤(일반 950톤, 지정 3,110톤)
- 처리방법 : 조합원사(15개사) 위탁 소각처리

•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법

- 문제점 :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참여 조합원사의 기존 반입폐기물 처리 정체 발생
- 해결방법 :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탁처리 참여 조합원사 보관기일 연장 조치 요청

현장사진1



처리 전(前)



처리 후(後)

현장사진2



처리 전(前)



처리 후(後)

현장사진3



처리 전(前)



처리 후(後)

•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사진

V.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시 착안 사항

01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대상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연체·체납 등 경영상태 부실로 부도·폐업 우려 업체
-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관리가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는 보증보험 가입 업체
- 임시보관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 등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02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착안사항

구분	주요 내용
방치 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 보관 불가 (필요시 측량 실시)2) 폐기물의 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표지판 설치3) 폐기물처리시설(파쇄·분쇄 등)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4) 수탁 처리능력에 비해 폐기물을 초과하여 받고 있는지 확인 -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5)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방법의 적정여부 확인 - 허용보관량 대비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확인6) 소각재(바닥재,비산재) 적치량 및 적정여부 확인 - 소각재 다량 적치 시 방치폐기물 발생우려7) 폐기물 재활용 시 발생하는 잔재물의 적정처리여부 확인 - 잔재물 다량 적치 시 방치폐기물 발생우려8) 수급불균형(반입폐기물/생산제품) 여부 확인 -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폐기물 또는 제품 적치시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03 방치폐기물 예방 지도·점검 사례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 허용보관량 초과

- 허용보관량 초과 시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허용보관량 이내로 처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점검 필요

※ 확인방법 : 적치보관량 산출을 위한 측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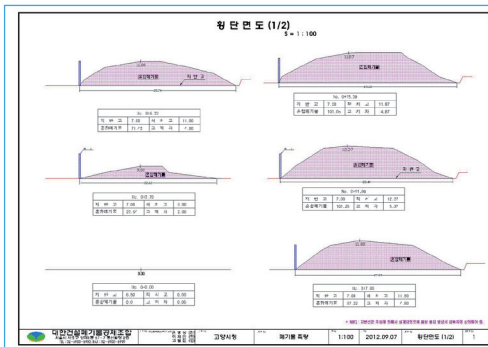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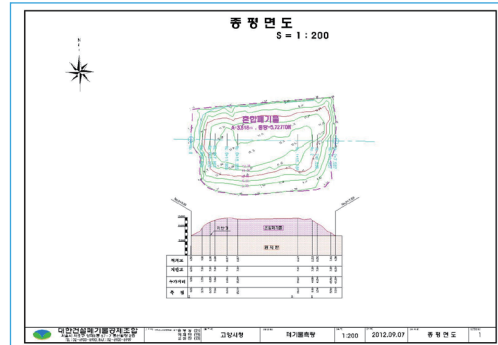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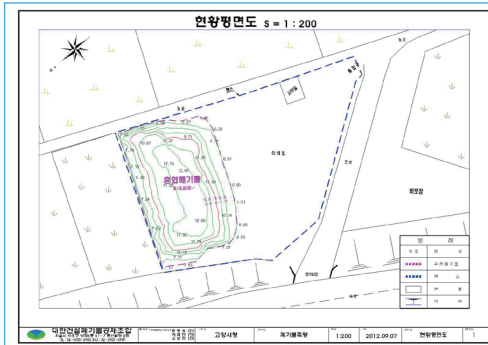
<허용보관량 초과 상태>

<허용보관량 이내 처리>

• 보관량 산출 방법

-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부피)을 계산한 후 폐기물종류별 비중을 곱하여 허용보관량을 산정





축척	거리(m)	단면적(m ²)	평균단면적(m ²)	폐기물보관량(m ³)	비고
No.0+0.00	0.0	0.0	0.0	0.0	
+3.70	3.7	23.5	11.8	43.5	
+6.33	2.6	71.4	47.5	124.9	
+7.96	1.6	87.2	79.3	129.3	
+11.86	3.9	101.3	94.2	367.5	
+15.39	3.5	101.1	101.2	357.1	
+35.16	19.8	101.4	101.2	2000.8	
+40.00	4.8	84.4	92.9	449.5	
+41.54	1.5	73.4	78.9	121.5	
+45.96	4.4	20.3	46.9	207.2	
+47.59	1.6	0.0	10.2	16.6	
계				3,818	m³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실제 비중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한다.

• 공제조합 지도점검 결과 필요시 허가기관 특별관리 건의

- 공제조합 지도점검 결과 허용보관량 초과, 신용상태 불량, 도산의 위험성 및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허가기관에 특별관리 요청

요청사항	➔	해당사항을 정확히 명시하여 허가기관에 공문서로 요청
1. 반입량 제한 2. 일정기간 반입 금지 3. 특별점검		

- 각 공제조합들은 보증보험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활동 시행

• 폐기물 보관 장소 원지반 확인

- 석축 또는 옹벽 상단 밑 부분은 원지반이라고 주장하나, 대부분 폐기물로 적치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 필요
 ※ 확인방법 : 원지반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등으로 확인 필요시, 건설장비(굴삭기) 등으로 굴착하여 원지반 확인



<원지반 확인 필요>

<굴착하여 원지반 확인>

• 가연성폐기물 및 혼합건설폐기물 과다 적치

- 전체 보관량이 허용보관량 이내로 적치되어 있어도 방치폐기물 발생 시 고액의 처리비용이 발생함으로 적정 보관 유도 필요

※ 관리방안 : 가연성폐기물이 장기간 및 다량으로 적치되지 않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필요



<처리 전>

<처리 후>

•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보관 여부 확인

-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성상별로 보관 장소를 구분하여 경계 및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



<성상 구분 없이 혼합 적치>

<경계 구분 및 보관표지판 설치>

• 사업장 내·외부에 폐기물 매립 및 적치 여부 확인 필요

- 허가받은 사업장부지 안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측량 및 지적도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산 법면부에 매립>

<노출 후 전량 처리>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사업장 내 폐기물 야적(옥외보관)

- 폐기물이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내 야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관시설내 폐기물 보관을 유도하여 시정조치



<폐기물 옥외보관>



<보관시설 내 폐기물 보관>



• 반입불가(이행보증대상폐기물 외) 폐기물의 반입

- 이행보증대상폐기물인 폐타이어 외 폐합성수지의 반입사실이 확인되어 이행보증대상폐기물 준수를 유도하여 시정조치



<반입불가폐기물 반입>



<이행보증대상폐기물 준수>

- 폐기물 잔재물 적치

- 폐기물 재활용시 발생하는 잔재물이 적치됨에 따라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시정조치



<폐기물 잔재물 적치>



<폐기물 잔재물 적정처리>

-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방치폐기물 분담금 납부후 재 위탁처리

- 00 중간처분업체는 초과보관량(1,569.59톤)이상으로 폐기물을 재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승인 받아 처리하면서 허용보관량 초과분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763,386천원)하여 처리기간 내 처리
- 처리 기간 : 2018.11.5. ~2019.2.14.(100일간)
- 처리사항 : 방치폐기물 환급신청에 따른 폐기물처리여부를 확인하여 환급금 지급처리
- 보증보험에 분담금 납부한 경우 반드시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폐기물 보관상태 확인결과 처리완료 현황

04 방치폐기물 처리주체별 조치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양도·양수한 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권을 양도·양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제33조 및 「건설폐기물법」제31조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책임도 양도·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안내 공문발송 • 양도·양수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조치명령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사유와 행정대집행 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보 • 양도·양수자가 안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실시 • 행정대집행으로 방치폐기물을 적정 처리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처리비용 회수
폐기물을 방치한 행위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자의 재산상태 등을 추적 조사하여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보 • 폐기물 방치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실시 • 행정대집행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구상권을 행사
토지소유자 또는 소유권을 양도·양수한 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자에게 「폐기물관리법」제48조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가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 • 같은 법 또는 조례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 경우 예상되는 행정대집행의 사유와 절차 등을 통보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처리 및 구상권 행사
법원경락을 통하여 인수한 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 경락을 통하여 허가권이나 토지소유권을 인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제33조 및 「건설폐기물법」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고,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안내 공문을 발송 • 인수한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 경우 예상되는 행정대집행의 사유와 절차 등을 통보하고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실시 및 구상권 행사
처리주체를 다양하게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주체(처리비용 확보가 가능한 자)별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 • 비용분담 방안을 토대로 처리주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시행(각 처리의무자가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가능)

구분	주요 내용
처리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 추진 - 운반비 등 불가피한 비용은 행정대집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업체를 선정·유치하고,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 - 지원비용은 행정대집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 부도업체에 대한 채권을 지자체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후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부도업체 입찰을 통하여 채권과 처리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

05 방치폐기물 관리주체별 관리방안

구분	주요 내용
공통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또는 지방세 납부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통보 받아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연체하거나 체납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실태를 중점적으로 관리 • 연체 또는 체납을 인지한 날로부터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특별단속 실시 등의 관리대책을 수립·시행 •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폐업 신고 등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방치폐기물은 사전에 적정 처리토록 조치한 후 관련 행정행위를 집행
	<p>▶ 허가취소 시 조치사항(영업정지 시에도 사전 조치)</p> <pre> graph LR A[허가취소 사유발생] --> B[폐기물 반입 중지명령] B --> C[폐기물 보관량 확인] C --> D[보관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E[잔여폐기물은 처리 의무자에게 조치명령] --> F[미처리시 이행보증 처리추진] F --> G[이행여부 확인] </pre>
	<p>▶ 휴업 및 폐업신고 시 조치사항</p> <pre> graph LR A[휴업신고(폐기물처리계획서 적정여부 확인)] --> B[폐기물반입 중지명령] B --> C[폐기물 보관량확인] D[이행완료시 신고 수리] --> E[이행여부 확인] E --> F[보관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pre>
	<p>▶ 부도 등 발생 시 조치사항</p> <pre> graph LR A[업체부도] --> B[폐기물 보관량 현지확인] B --> C[보관폐기물 적정처리 유도] C --> D[미이행시 고발조치] E[미처리시 고발 및 행정대집행 실시] --> F[양수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pre>
	<p>※ 방치폐기물은 발생형태가 다양하므로 각 사안별로 적정조치방안 강구</p>

구 분	주 요 내 용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업체별로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 -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폐기물 방치우려가 높은 사업장 • 폐기물 종류별 배출주기, 종류별·주기별 배출량 등 배출실태를 토대로 중점관리기간을 설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 배출주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하되, - 폐기물 보관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토록 권고
폐기물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제품 생산능력과 제품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반입 또는 보관량 등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관중인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시행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입되는 일평균 폐기물량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일평균 처리능력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판단 • 허용보관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평균 반입물량을 제한하도록 해당 업체에 행정지도를 실시 • 허용보관량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허용보관량을 초과 시 공통사항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보관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보관 가능한 량보다 허용보관량을 축소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 허가(또는 신고)된 보관장소(또는 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또는 시설)에 불법 보관하는 업체 •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보관량을 축소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는 범위반에 따른 처분과 초과보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필요시 변경허가토록 조치) -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제65조제10호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한편, 영업정지를 병행하여 처분

VI. 협조 사항

※ 허용보관량 초과 적치 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추가 조치 필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01 보험금액 조정 또는 보험계약 갱신 조치 필요

-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기간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 시(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필요
 -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여 갱신 필요
 - 보험금액 산출기준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0
 -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종류별 기준단가를 적용
-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5호) 참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01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확인

- 허가·승인 또는 신고 시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량(보관용적×비중)을 확인 또는 측량(계측)하여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

02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조치 및 공제조합 그 사실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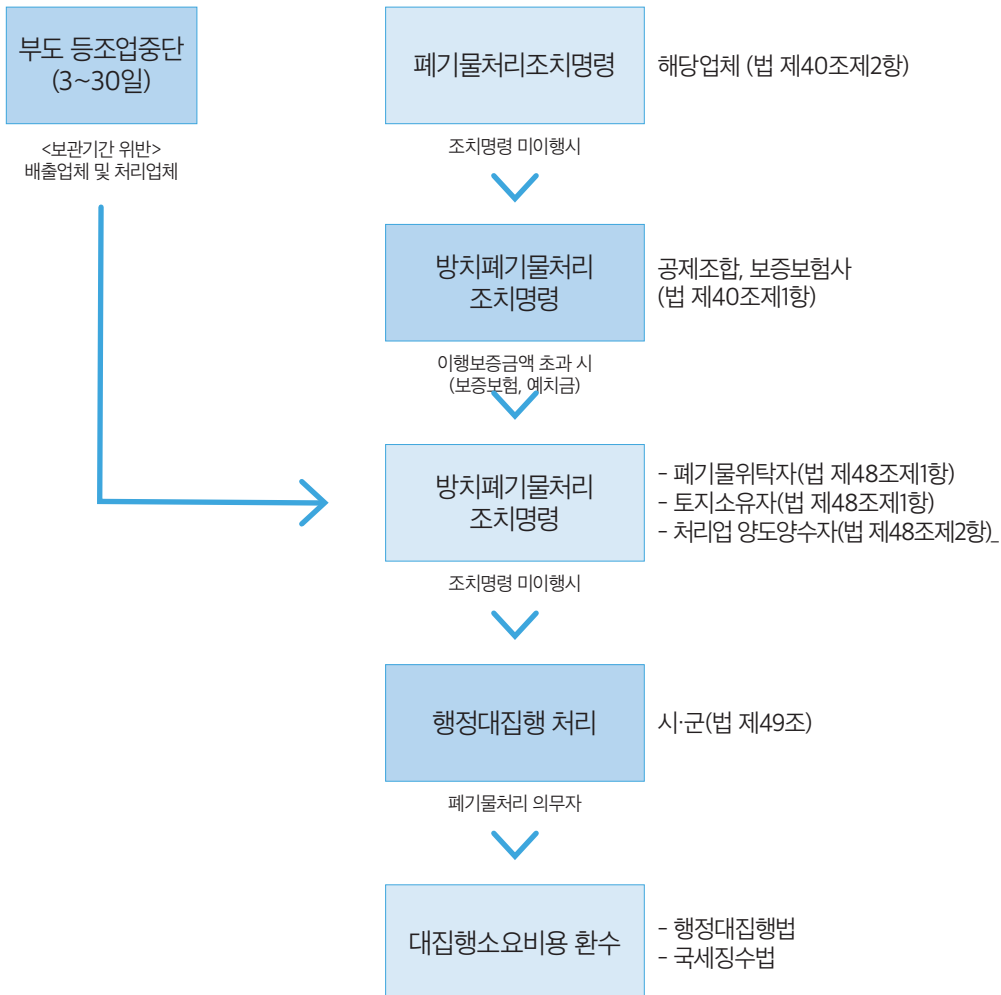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초과 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 필요
-

VII. 관련 법령 및 참조사항

01 폐기물관리법

•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부도 등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미이행된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처리를 명하였음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지칭함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참조)



• 참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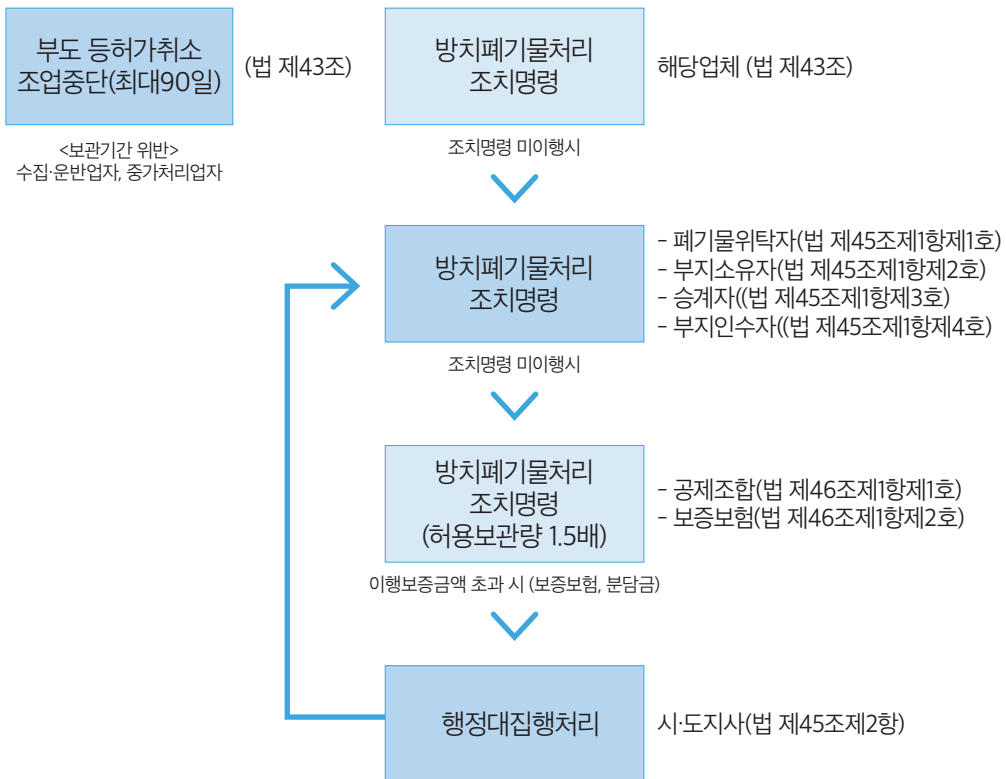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0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건설폐기물)

-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건설폐기물법 제2조제6호)



• 참조법령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참조 01

의료폐기물 관련 사항(폐기물관리법)

01 의료폐기물이란 ?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함

02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등
-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혈액원
-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
- 주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의과,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의 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 (의과,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의 기관)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직은행
-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과,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의 기관)

참조 02

관련기관 및 각 공제조합 연락처

소 속	담당부서	전화연락처	비고
환 경 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044-201-7375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17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18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5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410-5203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35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043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38-8844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사 무 국	02-6900-6900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사 무 국	02-718-7900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사 무 국	042-826-5935~7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사 무 국	02-2689-0592~3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사 무 국	044-623-5553 ~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0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11,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476,000
폐페인트 및 페락카	261,000
폐농약, 폐유독물	512,000
폐석면	511,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798,000
폐산, 폐알칼리	261,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08,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13,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88,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108,000
건설폐기물	43,000
의료폐기물	772,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170,000
식물성잔재물		126,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263,000
	기 타	213,000
폐윤활유		70,000
폐축전지		65,000
페드럼(원/개)		300
폐산, 폐알칼리		197,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42,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26,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38,000
폐전선		171,000
폐오일필터		41,000
페타이어		67,000
폐플라스틱 용기		48,000
폐규조토, 폐점토		50,000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페인트		161,000
광재	일반	89,000
	지정	109,000
분진	일반	89,000
	지정	109,000
폐합성수지	단일품목	49,000
	혼합품목	219,000
폐합성섬유		54,000
폐식용유		37,000
폐아연		41,000
폐유 (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211,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89,000
	지정	109,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39,000
폐촉매		39,000
폐합성고무		86,000
철강슬래그		38,000
폐주물사, 폐사		44,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39,000
폐섬유류		52,000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63,000
	피혁가공잔재물	105,000
폐석회, 폐석고		39,000
폐목재		45,000
음식물류폐기물		112,000
의료폐기물		631,000

비고 : 폐기물 종류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0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95,000
동물성잔재물	106,000
식물성잔재물	79,000
유기성오니	78,000
폐지, 고철, 폐포장재	0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01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및 이행보증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자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자,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 시행규칙 [별표기 비고6에 해당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고 직접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 중 단서에 해당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자 그리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지, 고철, 폐포장재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음.

나. 대상업무

(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 대상, 이행보증금 산정, 이행보증 시기 및 방법, 미이행업체에 대한 처분 등 이행보증과 관련한 사항

(2) 방치폐기물의 처리관련 업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한 업체에서 방치폐기물 발생시 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주체, 처리대상 범위 및 처리절차 등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 용어의 정의

가. 방치폐기물

- (1)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한 경우, 시·도지사(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허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법 제40조제2항)
-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건설폐기물법 제2조제6호)

나.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건설폐기물중간처분업자
 -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을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의 허용보관량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해당 업체의 1일 처리능력 1일분이상 30일분이하에 해당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량

다.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 또는 보관량(이하 “허용보관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등)

4. 이행보증 시기 및 범위

가. 법 제40조와 건설폐기물법 제42조에 따른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
 - 영업시작(건설폐기물중간처분업자는 사용시작신고) 전까지(폐기물을 수탁하기 전까지)
-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임시보관장소로 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한 경우에도 이행보증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의 범위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
 -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의 1.5배
- 폐기물처리 신고자
 - 신고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보관량)의 1.5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 승인받은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의 1.5배
- 이행보증 대상 보관량의 산정
 - 보관량은 해당 업체에서 보관하고자 하는 용량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보관가능한 최대용량을 허용보관량 등으로 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중 창고나 용기가 아닌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면적과 동 면적에서 보관 가능한 높이를 고려한 보관용적을 허용보관량 등으로 한다.

(2) 초과보관량(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 해당업체의 허용보관량의 1.5배와 초과보관량의 3배

다. 이행보증 방법 : 법 제40조제1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 (1) 법 제43조나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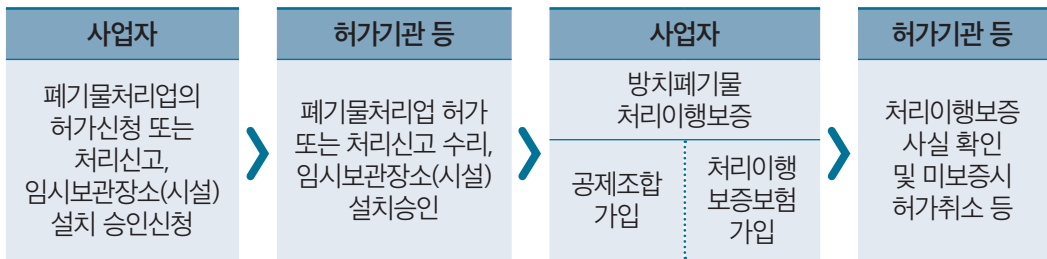
02 보증절차

1. 관련규정 : 법 제40조 및 건설폐기물법 제4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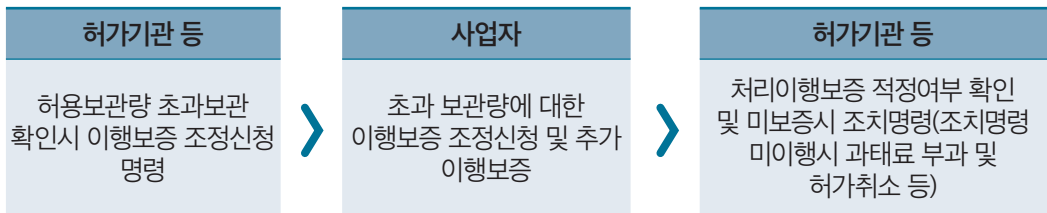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사업자(이하 “이행보증 대상자”라 한다)는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임시보관장소 또는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폐기물을 보관하기 전)까지 이행보증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이하 “이행보증”이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증대상

(1) 허용보관량 범위 내에서의 이행보증



(2)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1)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을 개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사용 시작신고)하기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나 건설폐기물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허가기관 등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임시 보관장소 또는 임시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을 한 후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행보증 없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가. 이행보증대상자가 업종별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결성한 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공제조합 가입자”라 한다)와 공제조합에서는 분담금 납부사실을 허가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공제조합에 탈퇴신청을 하거나 제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허가 기관 등에 통보토록 공제조합에 요청한다.
- 공제조합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공제조합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제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는 지체없이 다른 이행보증방법(법 제40조제1항제2호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을 한 후 관할 허가기관 등에 보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허가기관등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통보될 경우 해당자의 폐기물 반입 및 보관현황 등을 점검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처분과 함께 초과보관량을 포함하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허가기관 등은 공제조합가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용보관량 초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는 초과 보관량에 대한 추가 이행보증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가입

가. 보험의 가입기간

(1) 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연도 단위로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은 보험가입기간과 보증기간(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최초 가입일자가 회계연도 중일 경우에는 익년 말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하고, 동 가입기간에 60일의 보증기간을 가산

예) 2011.11.20일 영업개시일로 1년 기간으로 보험가입시(가입기간 : 2011.11.20 ~ 2012.12.31, 보증기간 : 20011.11.20 ~ 2013.3.1)

(2)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는 보험가입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 (3)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회계연도 단위로 하고, 보험계약 종료일에 60일의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 (1)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액을 산출하되, 처리단가는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종류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 허용보관량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1.5
- 허용보관량 초과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0
- 보험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다. 보험가입시 보험금 수령인 지정

- (1) 이행보증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를 허가기관등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험에 실제로 가입하는 이행보증대상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보험금액 조정 또는 보험계약 갱신

- (1) 다음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갱신일 또는 재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지도 점검 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변경허가 대상) 또는 처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단가 변경(관련고시 개정)
- 허용보관량의 변경(변경허가 대상)
-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 (2)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8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계약갱신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보증보험계약의 갱신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1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3)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기간(보증기간이 아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관할 허가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보험가입자가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등은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법 제40조제8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계약 갱신을 명한 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제1항이나 건설폐기물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시설 폐쇄를 명령하거나 폐기물 처리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보험가입자가 계약갱신 기한 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보험가입자가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허가 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사로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허가 기관 등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행보증 대상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 갱신계약 시 아래에 따라 보험계약을 갱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갱신시 보험기간은 당초 계약된 보험기간 종료 시 (보험가입기간에 보증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초과보관량이 전량 처리되지 아니하고 당해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되어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 대상에 초과보관량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보험약관 심사방법

- (1) 허가 기관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인출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가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이행보증 대상자에게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4. 관련서류 작성요령

가. 산출내역서

- (1) 폐기물 종류별로 허용보관량을 각각 산출한다.
 - (2) 폐기물처리단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종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하되, 고시된 품목에 해당품목이 없을 경우는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유사한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한다.
-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허용보관량이 폐유 5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폐페인트 300톤인 경우의 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 종류	허용 보관량	처리단가(예시)	안전율	산출금액
폐유	50톤 ×	211,000원/톤	× 1.5 =	15,825,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	476,000원/톤	× 1.5 =	71,400,000원
폐페인트	300톤 ×	261,000원/톤	× 1.5 =	117,450,000원
계				204,675,000원

예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유 2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을 보관하는 경우 초과보관량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

폐기물의 종류	허용 보관량	처리단가(예시)	안전율	산출금액
폐유	20톤 ×	211,000원/톤	× 3 =	12,660,000원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톤 ×	476,000원/톤	× 3 =	14,280,000원
계				26,940,000원

6. 이행보증의 적정여부 검토요령

가. 최초 이행보증 및 조정사유 발생시

-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 보관시설 설치승인서의 허용보관량과 일치여부 확인
 -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 환경부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 (3) 현장 확인
 - 허가·승인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으로 한다)시 제출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형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보관형태 :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폐기물 보관형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관중인 폐기물더미의 밀면적과 높이 등이 허가등을 위해 제출한 면적 및 높이 이내인지 확인한다(필요한 경우 계측을 실시한다).
 -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을 계산한 후 폐기물종류별 비중을 곱하여 허용보관량을 산정한 후 초과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실제 비중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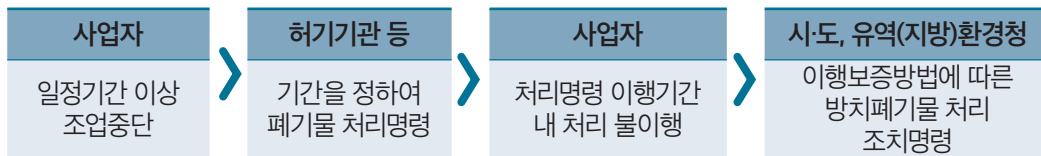
- 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한 경우
 - 당초 제출된 보관시설 등의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당초 보관형태대로 변경하여 보관토록 조치한 후 조치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도 점검시

- (1)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최초 이행보증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 이행보증대상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량(보관용적 × 비중)을 확인 또는 계측하여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 필요시 실제 보관량에 대한 측량 등을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및 초과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 보관여부 확인
 -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경우 반입폐기물을 바로 처리시설에 투입하여야 하며, 허가 기관 등은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03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처리절차>



1. 조업정지시의 폐기물처리명령 요건(법 제40조제2항, 건설폐기물법 제43조제1항)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이상 조업을 중단(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 경우

※ 조업중단 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 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업중단 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1) 동물성잔재물 및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그 밖에 쉽게 부패·변질되는 폐기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판단기준
 - 보관용기 부식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등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3일 이상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명령 가능 (3) (1) 및 (2) 외의 경우 : 1월

나. 건설폐기물의 경우

-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을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다.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 지정

- (1) 허가 기관 등은 폐기물량과 환경오염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명령 기간을 1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등은 1월의 기간이내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명령 기간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다만,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 (2)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처리명령 기간내에 자체처리가 곤란하여 재위탁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위탁처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위탁을 승인할 수 있다.

2. 이행보증 방법별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한 조치

가.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대상

-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한 자가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해 처리를 명령하여도 처리명령 기간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일 경우 허가기관등은 다음의 방법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처리이행보증 방법별 조치절차

(1)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 허가 기관 등이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하는 때에는 주변환경의 오염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허가 기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 기관 등이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할 수 있는 처리량

- 폐기물처리업자 방치폐기물 :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 폐기물처리 신고자 방치폐기물 : 신고 보관량의 1.5배 이내
- 공제조합은 공제조합 가입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 건설폐기물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제조합은 처리명령 기한내에 방치폐기물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허가 기관 등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허가 기관 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허가 기관 등은 공제조합이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기간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명령과 함께 법 제65조나 건설폐기물법 제63조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가 공제조합에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그 시점에서 폐기물보관량을 확인하여 공제조합에 통보하고, 방치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조치사항

- 허가 기관 등은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이행보증금액 등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히,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즉시 보관폐기물량을 조사하여 이행보증대상자에게 처리를 명하는 한편, 그 사실을 보증보험사에 통보하고, 이행보증대상자가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즉시 보험을 청구하는 등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 보험금은 허가기관등에서 수령한 후 방치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이하 “위탁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허가기관 등이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수령을 위임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다.
-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 실제 처리한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한다.
 - 위탁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후 허가기관등에 보고하는 경우 허가 기관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처리업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허가기관등은 위임장을 발급하고, 보험회사에 위임장 소지자에게 정해진 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통보한다.

(3) 이행보증조치로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 허가 기관 등은 조업정지 등에 따른 처리명령시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보관량과 함께 수탁관련 자료(반입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한편, 폐기물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미처리된 방치폐기물이 있을 경우 허가 기관 등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는 등 방치폐기물이 처리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04 행정사항

1.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현황 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반기말 현재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허가등의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할 시·군·구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2.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5일까지(하반기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 및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61호, 2012.8.8>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칙 <제553호, 2015.8.10>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000호, 2016.12.>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

1. 총괄표(업소수)

구 분		계	공제조합가입	폐기물처리 보증보험가입
계				
수집 운반업	소 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	소 계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전문		
		기계적 처리전문		
		화학적·생물 학적 처리전문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제외)	재활용 전문		
		재활용 이외		
	의료폐기물			

구 분		계	공제조합가입	폐기물처리 보증보험가입
계				
최종 처분업	소 계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처분업				
재활용업	소 계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처리이행보증방법별 업소명단

가. 공제조합가입

구 분	업소수	업소명	조합명	가입일자	이행보증 폐기물량(톤)	비 고 (업종)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구 분	업소수	업소명	조합명	가입일자	이행보증 폐기물량(톤)	비 고 (업종)
계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자						

* 이행보증 폐기물량은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물량(허용보관량 × 1.5)을 기재

* 비고는 처리대상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을 기재

나.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구 분	업소수	업소명	보증보험 계약기간	보험금액 (천원)	비 고 (업종)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구 분	업소수	업소명	보증보험 계약기간	보험금액 (천원)	비 고 (업종)
계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업					
폐기물처리 신고자					

* 비고는 처리대상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을 기재

* 보험가입기간은 보험 계약기간과 보증기간(60일)을 합한 전체 기간으로 작성(예, 2012. 8.12~2014.3.1)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

(단위 : 톤)

관할 행정 기관	업소명	소재지	업종	이행 보증 방법	발생현황				처리현황			잔량	향후 처리계획 및 처리방법	비고		
					폐기물 종류	발생 일차	발생 원인	폐기물 종류	처리 일자	처리 량	처리 방법					
															발생량	발생 일차

※ 작성요령

- 1) 발생일자는 조업중단 후 처리명령 시 정한 처리기간일 다음날을 기재
- 2) 이행보증방법 : **공제조합 가입** 또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구분하여 작성
- 3) 방치폐기물 처리현황 : 처리량은 신규 발생 방치폐기물 중 폐기물종류별 처리한 량을 기재. 처리방법은 행정대집행, 조치명령(처리업자, 토지소유자, 경락자 등), 이행보증금(**조합분담금**, 보증보험)으로 구분 기재
- 4) 잔량 : 신규 발생량 중 처리한 양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폐기물 양을 기재
- 5) 향후 처리계획 및 처리방법 : 행정대집행, 조치명령(처리업자, 토지소유자, 경락자 등), 이행보증금(**조합분담금**, 보증보험)으로 구분 기재
- 6) 비고 : 보관상태, 처리완료 예정일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재

디자인 · 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대표)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한국폐기물협회

KOREA WASTE ASSOCIATION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Korea Construction Resource Mutual Aid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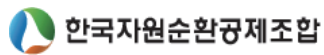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Korea Waste Recycling Association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